

「2022년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2년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기한 연장)하오니, 해당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03. 25.

전남대학교병원 원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2022년 01월 ~ 2022년 12월(12개월)
- (주관기관) 전남대학교병원(총괄책임자 김성진)
- (참여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
- (사업목적)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 센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코스메디케어 신산업 창출
- (지원내용) 코스메디케어 관련 기업의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전국 소재 코스메디케어 관련 제조 또는 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체
- (지원품목) 화장품(기능성 포함), 코스메디케어 기기, 기타 코스메디케어 관련 제품 등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직접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 또는 간접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외주기업) 방식으로 지원

3

지원프로그램

유형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접수처	비고
C-1	협력네트워크지원	5건	5,000천원 이내/건당	(재)광주테크노파크	-

- ※ 선정 평가 시, 본 사업단의 가점 기준에 부합한 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며, 관련 증빙 제출 必(증빙 미제출 시 가점 반영되지 않음)
- ※ 세부사업 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해당사업은 기업 해당관련 비용을 선지출한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출금액 중 부가세는 지원 금액에서 제외함
- ※ 지원금액 초과 지출 시 초과지출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함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① 기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원본 1부	필 수
② 기업지원 신청 위한 부대서류 일체 각 1부	필 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 수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필 수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재무제표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필 수
⑥ 지식재산권 (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보유 기업에 한함
⑦ 국내외 인증(MFDS, CE, FDA, CFDA 등) 보유 현황	
⑧ 우수 기술 인증 등 기타 실적 증빙	

- ※ 기업 사업화 및 기술 역량 등의 평가 위한 지식재산권, 인증 등의 관련 증빙 보유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원절차)

절차 및 예상일정	세부내용
↓	
수혜기업 모집 공고 (22.03.25.~04.22.)	전국단위 통합공고(기한 연장)
↓	
수혜기업 신청 (22.03.25.~04.22.)	지원신청서 접수(주관/참여기관 담당자, E-mail, 방문, 우편접수)
↓	
기업예비진단 (22.04.18.~04.22.)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현황 진단 - 수혜기업 선정전 기업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 수혜기업 참여 제한 요건 검토
↓	
선정평가 (22.04.25.~04.26.)	서면 평가 - 지역내외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선정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 및 사업수행 (22.04.25.~10.31.)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2022.05.02.~2022.10.31.(6개월)
↓	
중간모니터링 (협약기간 내 수시)	사업진행사항 중간모니터링(수시) - 수혜기업의 기업지원 수행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 매칭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지급 (22.11.01.~11.14.)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후 사업비 집행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견적서 등)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지원기관의 내부 절차에 의함
↓	
성과분석 (22.11.15.~11.30.)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함 : 지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적정성(25점), 제품의 사업성(35점), 기대효과(20점), 기업역량(10점), 매출고용(10점), 타겟기업가점(5점), 신규창업기업(3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25	- 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사업비 산정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제품의 사업성	35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단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협력 체계 적정성
기대효과	20	-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산업 창출 기여도 가능성 - 융합 제품 개발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기업역량	10	-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능력 -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 사업화 역량 : 주력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성장률,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 기술 역량 : 기업 전체 보유특허 및 필요기술관련 기술·제품 보유특허, R&D 인력 채용 계획 등
매출고용	10	- 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자 수 (※ 하단 평가지표1 참조)
타겟기업가점	5	- (제품개발) 본 과제 또는 타 정부R&D과제 등을 통해 개발한 제품(또는 신원료)(1년 이내) - (유망기업) 본 세부 과제를 통해 기술사업화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 (※ 상세사항 5p 지표 참조)
신규창업기업	3	- 3년 이내 신규 창업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108	

※ 타겟기업가점의 경우, 배점 기준에 2가지 모두 해당되더라도 최대 5점 부여 가능

※ 가점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 제출 必(증빙 미제출 시 가점 적용되지 않음)

- 매출고용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1-1. 매출액 (5점)		1-1 매출액		1-2 종업원 수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2. 종사자 수 (5점)		5	10억 이상	5	15명 이상
		4	8~10억 미만	4	10~15미만
		3	6~8억 미만	3	5~10미만
		2	4~6억 미만	2	1~5미만
		1	2~4억 미만	1	0명

○ 타겟기업 가점 평가 항목 및 증빙서류

-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타겟기업 대상으로 정량적 항목 기준에 대한 가점 부여를 통해 전주기 통합 지원 실시
- (타겟기업1-제품개발) 본 과제 또는 타 정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제품(1년 이내)
- (타겟기업2-유망기업) 본 세부 과제를 통해 기술사업화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

유형	평가항목	증빙서류 또는 확인방법	해당 사항
(유형1) 제품 개발	○ 본 과제 협력네트워크 통해 제품 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임상의 연계 제품 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타 정부R&D 과제 통해 제품 개발(1년 이내)	연구개발계획서 및 협약서	
	※ 제품 개발 유형 해당 시, 상기 평가 항목 중 해당 항목 택 1 (중복 가산 미적용)		
(유형2) 유망 기업	○ 직접 생산 시설 보유 기업 (+3)	공장 등록증	
	○ 지원신청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보유 또는 해외 인증서 보유 기업 (+3)	특허 출원증 또는 등록증 해외인허가증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인정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INNO-BIZ 인증서 MAIN-BIZ 인증서	
	○ 벤처기업확인서 (+1)	벤처기업확인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	관련 인증서	
	○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1)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유망 기업 유형 해당 시, 최대 5점까지 반영 (중복 가산 미적용)			

※ 배점 한도 내에서 유형1 및 유형2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하여 반영 (최대 5점)

※ 타겟 기업 신청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6

접수방법

- (공고기간) 2022. 03. 23.(금) ~ 2022. 04. 22.(금)
- (접수기간) 2022. 03. 23.(금) ~ 2022. 04. 22.(금) 까지
 - (기존) 2022. 03. 23. ~ 04. 15. ⇒ (연장) 2022. 04. 16. ~ 04. 22.
- (접수방법) 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별 담당 기관에 E-Mail 접수(날인 원본 및 스캔본)
 - 또는 우편 제출(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방문 접수 지양)
- (문의 및 접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주소
(재)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전임	062-602-0806	hgkang @gjtp.or.kr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의료산업지원센터

※ 문의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 17시 30분까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 해당 기관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 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요망
- 지원 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집행기준에 따름

첨부 1. 2022년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사업 수혜기업 신청서 각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광주테크노파크
GWANGJU TECHNOPARK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
Gwangju Cosmetics Industry Promotion Association

C-1. 협력 네트워크 지원

사업명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사업		
세부사업	협력 네트워크 지원		
담당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 (접수처)	강흥구 전임(062-602-0806) hgkang@gjtp.or.kr
세부과제 수행	2022. 05. 02. ~ 2022. 10. 31.(6개월)		

1. 사업 개요

- 코스메디케어 관련 전·후방 산업 연계 네트워크 활용을 지원하여,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사업 추진 효율성 증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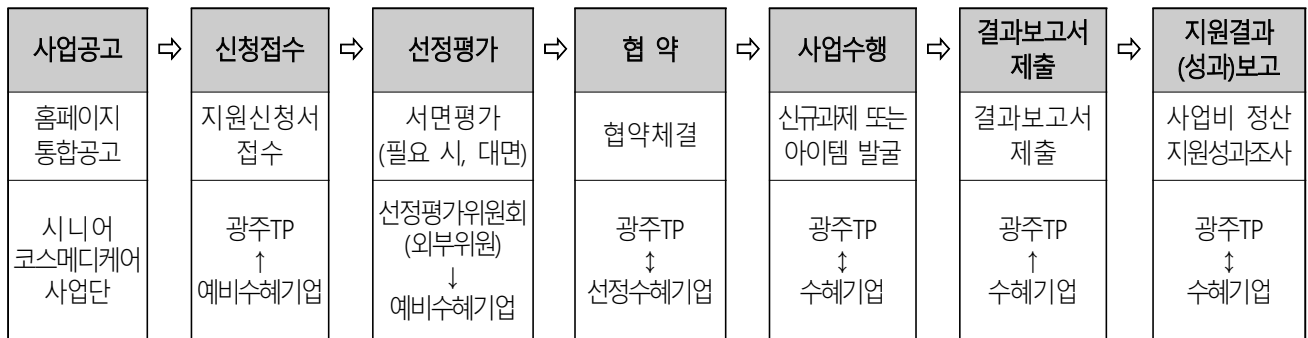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부족한 기술 개발 및 신규 사업화 아이템 발굴을 위해 산학병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 발굴 연구회 운영 지원(전문가 수당, 회의비)
- 지원금액 : 최대 5,000천원 이내/건 (VAT 제외)
- ※ 지원금액 초과 시 수혜기업 부담

3. 대상기업

- 전국 소재 코스메디케어 관련 제조 또는 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체

4. 사업수행 절차



※ 대면평가 원칙으로 하나, Covid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진행함.

5. 지원금 지급방법

- 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 증빙 제출 후, 일괄 지급을 원칙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 절차는 (재)광주테크노파크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따름

6. 기타 참고사항

- 발굴된 신규 과제 또는 개발 아이템은 관련 중복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必
- 협력 네트워크 개최 지원을 통해 산출된 보고서 등 자료 첨부必